



육군 제

52보병사단 - 서울교통공사

1社 1兵營 업무협약서



「육군 제 52보병사단」은 「서울교통공사」와 신의와 성실,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우호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안보공감대의 확산, 장병사기진작, 민군 유대강화와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'1社 1兵營' 협약을 체결한다. [이하 '본 협약'이라 한다.]

제 1조 【목 적】

본 협약은 상호협력 및 지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,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【협약범위】

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상호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지원하고 업무협조의 효율성 제고와 유대강화 등 폭 넓은 협력관계 유지와 관련된 분야이며,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제 3조 【협력 및 지원분야】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상호간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해 상호 협력한다.

1. 52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안보교육, 부대시설 견학 및 체험 지원 (사격 등 위험성 활동 제외)
- 나. 작전책임지역 내 역사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
- 다. 기념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등 교류

2. 서울교통공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수도서울 안정유지를 위한 작전수행시 CCTV 통합관제센터(관내 도시철도) 및 시설사용 등 요청 시 적극 지원
- 나. 부대장병 인성함양을 위한 기업·사회저명인사 특강, 서울 교통공사 시설견학, 직업체험 지원
- 다. 군 장병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지원
- 라. 취업지원 홍보활동(취업설명회, 취업관련 자문활동 등)

제 4조 【비밀유지】

1.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협약 후 상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본 협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상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2. 양 기관이 상대기관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, 상대 기관은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비밀 정보를 즉시 반환한다.
3. 본 조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.

제 5조 【협약의 효력 및 기간】

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협약체결 일로부터 최초 3년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씩 연장된다.
3. 양 기관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다만, 해지를 원하는 기관은 상대기관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4.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.

제 6조 【분쟁의 해결】

본 협약서는 제 4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제외하고는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협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한 협약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7월 20일



육군 제 52 보병사단
사단장 소장 정 철 재



서울교통공사
사장 김 태 호
